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11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3. 제안사유

- 「치매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자격과 갱신 조항의 구체적 반영 및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지원 근거와 위수탁의 해지 항목을 추가하고,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법」에 따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 자격, 위탁 기간과 위탁 갱신사항, 운영비·의료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 나. 매년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 서비스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다.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7조)
- 라.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마. 공유재산 사용 근거 및 유지관리 의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바.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사. 노인전문병원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 가. 제출배경

-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 2001년 1월6일 준공된 행정재산으로 초기에는 한국병원(인화재단)과의 위수탁 체결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7년 2월12일 (의)참사랑재단에서 수탁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임.

#### □ 병원 현황

- 명 칭 :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행정재산)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 \* 준공일 2001.1.6
  - 부지면적 : 4,391㎡ / 건축 3,540㎡(지하2층, 지상 5층)
  - 병 상 수 : 24병실 119병상
  - 직 원 : 54명(의사3,간호사13,조무사11,기타27)
  - 운영형태 : 민간위탁(의료법인 참사랑재단)
  - 수 탁 자 : 의료법인 참사랑재단(대표 최정봉)
  - 위탁기간 : 2016. 2. 12.~ 2021. 2. 11.
-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시행 2018. 12.13.)으로 신설된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됨.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병원 설치 근거 법령을 기존 「의료법」 제33조에서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으로 개정하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 에서 목적 규정에는 약칭 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제1조(목적)에 사용된 약칭표기를 제2조로 옮김.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의 설치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를 명시하였지만,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변경됨에 따른 개정임.

- 안 제4조는 병원의 운영 위탁 대상을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16조의3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개정함.
- 본 조례안에서 운영 위탁 대상에 대한 개정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3항에는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운영 위탁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임.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위탁기간의 개정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 환자의 진료 및 인권 보호,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등 업무에 관련한 의무와,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해 신축·증축·변경 시 사전 도지사 승인을 받을 것, 수탁재산에 대한 망실 시 변상 등 의무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안 제출, 제세공과금의 수탁자 부담, 운영으로 발생된 이익금의 재투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함.
- 안 제10조는 수탁자에 대한 보고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잘못된 문구 등을 정비함.
  - “기타” → “그 밖에”
  - “의거” → “따라”
  - “위탁의 취소” → “위탁의 해지”
  - “~한대로 한다.” → “~ 한다.”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개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위탁 운영 자격과 갱신 조항, 운영 지원 근거 및 위수탁의 해지 항목 등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작성되었고, 입법 절차에서도 문제가 없음.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30, 2001. 2. 9, 2012. 1. 13>

제2조(위치) 노인전문병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미평동)에 둔다. <개정 2001. 2. 9, 2012. 1. 13, 2014. 8. 8>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 2. 9>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기타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개정 1999. 7. 30)

제4조(운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이 끝난 후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9>

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3년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 2. 9>

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 전문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9>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설계·구입장비 승인등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도지사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2. 9>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9>

제6조(관리) 도지사는 노인전문병원의 적정한 운영 및 입원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요양치료 및 그외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수탁자가 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게 한다. <개정 2001. 2. 9>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간호·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7. 기타 노인전문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01. 2. 9)

제7조(입원 및 퇴원) 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의 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원 신청을 받아 입원시킨다.

② 퇴원의 판정은 신체의 상황 및 질병의 상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후 3개월이내에 적절히 실시하되,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치매요양시설 등에 이송 또는 귀가시킨다.

제8조(기록의 정리)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9>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용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 및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부정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